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71
----------	-------

발의년월일 : 2020. 10. 16.

발의자 : 이진분 의원 외 11명

1. 제정이유

- 홀몸노인의 증가와 가족돌봄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인 돌봄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사업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대상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7. 기타사항 : 붙임4 (부서 검토의견서)

【붙임 1】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증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9)